

# 국제법 현안 Brief

국제법 현안 Brief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박배근 교수 (부산대학교)  
 편집위원 김성원 교수 (한양대학교)  
 이기범 교수 (연세대학교)  
 오선영 교수 (충실대학교)  
 김현정 교수 (연세대학교)  
 투고문의 ksilbrief@gmail.com  
 웹사이트 www.ksil.or.kr

국제법 현안 Brief는 국제법 관련 현안문제에 관해 간략한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국제법 연구자는 물론 일반인에게 국제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최근 현안과 관련된 국제법 쟁점에 대한 인식과 최근 국제법 동향에 대한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국제법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인준영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부교수)



사진 출처: 아시아 경제 24.10.28자

### 1. 논란의 배경

2024년 10월 15일 우크라이나 언론은 북한군 3,000명이 러시아로 파병되었다는 보도를 통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의혹을 공론화했다. 10월 18일에는 대한민국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 폭풍군단(11군단) 예하 4개 여단 규모 1만 2천 명의 러시아 파병을 결정했으며, 선발대 1,500명이 이미 이동했다고 공식 발표하였다.<sup>1</sup> 이에 대하여 신중한 입장을 보이던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역시 10월 23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했다. 정작 러시아와 북한은 현재까지도 파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파병을 적극 부인하지도 않고 있다. 10월 25일 김정규 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상

은 파병설에 대해 “만약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 이라고 강조하였는바, 이는 북한이 사실상 파병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sup>2</sup>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공식화된 이후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대통령실에서 북한군의 활동과 전황을 분석할 전황분석팀을 파견할 필요성을 언급하자, 일각에서는 정부가 우크라이나 현지 참관단 또는 모니터링단에 통역관이나 심리전 특수요원 등을 포함시켜 포획된 북한군을 심문하는 데 참여시킴으로써 이들을 한국으로 귀순시키는 역할을 부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은 국제법적으로 허용되는지, 파병된 북한군의 국

제법적 지위는 무엇인지, 나아가 이들을 한국으로 송환하는 것이 국제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인지 등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쟁점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는 이미 발생한 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측면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위반 행위의 억제력을 위한 측면, 나아가 국제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합리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측면도 있으므로 적용 가능한 관련 국제법을 포괄적으로 조망하는 것이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이외에 확정적인 사실관계가 충분히 존재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전제로 제기되는 국제법적 쟁점을 폭넓게 검토하기로 한다.

## II. 러시아에 대한 북한군 파병의 위법성

2024년 10월 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열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관련 긴급회의에서 각국이 북한군 파병을 규탄하고 나서자, 바실리 네벤자 러시아 대사는 “만약 그 정보가 맞다고 해도 왜 러시아는 동맹국으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인가?” 라고 반문하며 “현재 서방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처럼 북한도 동맹국인 러시아와 협력할 수 있다” 고 주장했다.<sup>3</sup> 이는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과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것이 각각 국제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연결된다.

이 문제는 국제적 무력충돌의 당사국인 교전당사국과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비교전당사국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국제법 규칙인 전시 중립법(Law of Neutrality)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여기서 ‘중립’이란 전쟁상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력충돌에 참가하지 않는 국가의 지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전통적으로 중립법은 별도의 협약 없이 관습국제법을 통해 형성되어 왔으며, 20세기에 접어들면서 각각 육전과 해전에서의 중립을 규율하는 1907년 헤이그 제5협약<sup>4</sup> 및 제13협약<sup>5</sup>을 통해 부분적으로 성문화되었다. 일부 조항은 국가실행을 통해 사문화되기도 했지만, 중립법의 기본원칙은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된다.<sup>6</sup> 국제사법재판소(ICJ)는 핵무기 사용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통해 중립법상의 원칙은 관습국제법에 해당하며 모든 국제적 무력충돌에서 적용된다고 설시하기도 했다.<sup>7</sup>

중립법은 국제적 무력충돌 발발 시 적용되며, 특히 중립국에게 교전당사국 일방의 전쟁수행에 관여하지 않을 회피의무와 양 교전당사국 모두를 평등하게 대우할 공평의무를 부과한다.<sup>8</sup> 오늘날에는 중립국이 양 교전당사국 모두에게 동일하게 무기나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중립국의 중립법 위반, 특히 무기공급이나 군사적 원조의 기간이나 강도가 과도할 경우 해당 중립국은 그 중립국 지위를 상실하고 교전당사국으로 전환될 것이다. 그러나 국가실행에 있어서 일방적인 무기공급은 중립국 지위를 상실하는 사유로 간주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중립법상의 의무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1945년 유엔 헌장을 통해 무력행사가 금지된 이후로 침략의 피해국에 대해서까지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란이 있어 왔다. 특히 무력충돌에 참여하지 않는 제3국은 개전법규(*jus ad bellum*) 위반의 피해국에 대하여 간접적인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는데, 이는 교전상태와 중립의 중간상태인 비교전상태(non-belligerency) 내지는 제한적(qualified)·우호적(benevolent) 중립으로 일컬어졌다.<sup>9</sup> 한동안 이와 같은 견해는 충분한 국가실행이 축적되지 않아 학계에서 다소 회의적으로 평가되어 왔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한 다수의 국가들이 이 같은 실행을 따르면서 최근에는 관습국제법에 해당한다는 평가가 보다 우세하게 되었다.<sup>10</sup>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2월 이후 40여개국 이상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비롯한 각종 지원을 제공했고,<sup>11</sup> 이에 대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은 우크라이나가 행사하는 개별적 자위권에 대한 지원이 법적으로 정당화된다는 입장을 보였다.<sup>12</sup> 각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각종 지원을 정당화하기 위해 집단적 자위권을 원용하는 것이 아니라 침략의 피해국이 개별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을 지원할 권리에 의존하는 국가실행은 이른바 ‘제한적 중립’이라는 중간적 지위에 대한 법적 확신이 존재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전격 감행할 당시 푸틴 대통령은 침공 직전 러시아 국영 TV에서의 대국민 연설을 통해 유엔헌장 제51조상의 자위권을 원용했지만,<sup>13</sup> 이는 국제법상 정당화되기 어려운 불법행위로 평가된다. 러시아의 무력행사는 우크라이나 및 NATO의 현존하거나 임박한 무력공격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자위권의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침공 3일 전인 2월 21일 러시아가 그 독립을 승인한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은 국제법상 ‘국가’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들의 ‘요청에 의한 개입’도 정당화 근거가 되지 못한다. 같은 취지에서 2022년 3월 2일 유엔 총회 역시 압도적 다수표결로 러시아의 행위가 ‘침략행위’에 해당한다고 규탄했다.<sup>14</sup> 따라서 침략국인 러시아에 대한 여타의 지원은 엄연히 중립법 위반이라 할 수 있다. 애당초 러시아의 침공이 불법인 이상,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유엔헌장 제51조에 따른 집단적 자위권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이와 달리 무기공급을 비롯한 각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이른바 ‘제한적 중립’ 개념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불법으로 평가되는 반면,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라 할 수 있다.

### III.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국제법적 지위

현 시점에서 북한이 공식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느 정도까지 관여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정 가능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각각의 경우 북한군의 법적 지위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의 성격은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의미는 ① 북한이 러시아에 공식적으로 정규군을 파병하여 러시아와 공동 교전당사국이 된 것으로 볼 경우, ② 북한군 파견을 교전당사국으로서가 아니라 단순히 군사자문 내지 기술협력 차원으로 볼 경우, ③ 북한군 개인이 자발적으로 러시아 군대에 참전한 것으로 볼 경우(이 경우에도 러시아가 해당 북한군을 그 군대에 공식 편입했는지 여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①의 경우 북한은 우크라이나와의 관계에서 교전당사국의 지위를 갖지만, ②와 ③의 경우에는 비교전당사국의 지위를 가지므로, 이하에서는 각각의 경우 북한군의 국제법적 지위를 별도로 구분하여 논하기로 한다.

#### 1. 북한이 교전당사국인 경우

관습국제법상 네 가지의 누적적 요건이 충족되면 그 인원은 합법적인 교전자로서 적에게 포획시 전쟁포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sup>15</sup> 이와 달리 1977년 제네바 제협약 제1추가의정서 제44조 3항은 기존의 엄격한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민간인과의 구별 원칙만을 준수하면 전투원 및 포로 지위를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제1추가의정서의 당사국이므로 포획된 북한군은 일반적으로 전쟁포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될 것이다.

#### 2. 북한이 교전당사국이 아닌 경우

일각에서는 북한의 교전당사국 지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군 역시 정식 군대가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서의 ‘용병’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제기된다. 국제사회에서 용병을 규율하는 규범은 ‘1977년 아프리카에서의 용병 철폐를 위한 OAU 협약’, ‘1989년 용병의 모집, 사용, 자금조달 및 훈련에 관한 국제협약’, ‘1977년 제네바제협약 제1추가의정서’ 세 가지가 있으며 이들이 각각 용병을 달리 정의하고 있는데, 남북한은 물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1977년의 제1추가의정서만을 비준하였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북한군이 용병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제1추가의정서는 용병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47조 1항에 따라 용병에 대해 전투원 또는 전쟁포로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용병을 사실상 금지하는 효과를 갖는다.

그러나 제1추가의정서 제47조 2항은 매우 엄격한 여섯 가지의 요건을 누적적으로 충족하는 인원에 한하여 ‘용병’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sup>16</sup> 이에 따르면 북한군이 용병으로서의 여러 조건들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사적 이익이 아닌 이념이나 종교 등의 목적을 주장하거나, 단순히 훈련, 자문 또는 기술지원 임무를 주장하는 경우, 혹은 이들을 러시아의 군대에 공식 편입시키는 것만으로도 용병 활동의 규제를 손쉽게 회피할 수 있다. 따라서 러시아 파병 북한군이 용병으로 인정되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공식적인 교전당사국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소속 군인들이 러시아 군대에 공식 편입되어 전투에

참여한다면 이들은 공식적으로 러시아 정규군의 구성원이므로 포로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포획된 북한군에 대하여 북한과 러시아 모두 그 소속임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북한군이 어떠한 교전당사국과도 연계되지 않으므로 국가실행에 비추어 볼 때 포로 지위가 부여되기 어렵다. 포로는 적대행위 종료 시 그 소속국으로 송환되어야 하는데, 송환 대상국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포로 지위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스라엘 군사법원은 1969년의 카셈(Kassem) 사건을 통해 어떠한 교전당사국에도 소속되지 않은 인원에 대하여 포로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sup>17</sup> 이는 당시 어떠한 교전당사국도 포획된 인원이 자국 소속이라고 인정하지 않음에 따른 것이었다. 1999년 타디치(Tadić) 사건에서 ICTY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와 동일한 입장을 취했다.<sup>18</sup>

일반적으로 합법적 전투원으로서 포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들은 ‘불법전투원’(unlawful combatant) 내지 ‘비특권적 교전자’(unprivileged belligerent)라고 지칭되는데, 이들은 적대행위에 직접 가담하는 동안 합법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며 포획 시 포로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억류국의 국내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sup>19</sup>

## IV. 북한군 귀순의사 표명 시 한국 송환 문제

### 1. 북한이 교전당사국인 경우

북한이 교전당사국인 경우 포획된 북한군은 포로 지위를 갖는다. 이와 관련하여 1949년 제네바 제3협약 제118조 1항은 교전당사국에게 적대행위 종료 후 포로에 대한 석방 및 송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우크라이나는 적대행위 종료 후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할 의무가 있다. 1949년 제네바 제3협약 제7조에 따르면 포로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할 수 없으므로, 외견상 포로 수용국의 송환의무는 강제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포로 수용국은 1949년 제네바 제3협약 제12조에 따라 포로를 다른 국가로 이송할 수 있으나, 이는 일반적으로 공동 교전당사국을 전제한 것이므로 비교전당사국인 한국은 이송 대상국으로 보기 어렵다. 한국으로의 이송은 오히려 송환을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제46조 1항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포로 개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이들을 강제 송환하는 것 역시 국제인권법의 기본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6.25 전쟁 당시에도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들이 대거 발생함에 따라 그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당시 공산측은 1949년 제네바 제3협약 제118조 1항의 엄격한 문리해석을 통해 포로 개인의 의사와 무관한 전원송환원칙을 주장하였고, 제7조에 따라 포로가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제시하였다. 이와 달리 유엔사측은 개인의 의사와 무관한 강제송환은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자원송환원칙을 고수하였다. 이 같은 입장 차이로 휴전협상이 교착상태에 이르자, 1952년 12월 유엔총회는 “포로송환을 방해 또는 강행하기 위하여 무력이 사용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들은 제네바 협약의 세부규정과 당해 협약의 일반정신에 따라 항시 인도적으로 대우되어야 한다”는 결의를 채택하였다.<sup>20</sup> 그 결과 이 문제는 정전협정 제3조 51항에 따라 포로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최종 처리되었다. 포로가 대거 본국송환을 거부하는 상황은 분단상황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협약 성안 당시에도 상정하지 못했던 매우 이례적인 사례이다. 이에 1960년에 발간된 제네바 제3협약에 관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주석서에서도 6.25 전쟁 당시의 포로송환 방식이 제118조의 적용에 관한 선례가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sup>21</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1988년의 이란-이라크 전쟁, 1990~1991년의 걸프전, 1998~2000년의 에티오피아-에르트레아 전쟁 등 6.25 전쟁 이후의 여러 무력충돌에서 포로들이 송환을 거부하는 일이 계속 이어졌고, ICRC는 결국 포로의 자발적 의사를 존중했다. 이에 따라 2020년에 ICRC가 후속관행을 반영하여 업데이트한 제3협약 주석서는 “제118조에 명시적인 예외 규정은 없지만, 포로가 본국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될 실질적인 위협에 직면한 경우 송환 의무는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송환 거부의 근거를 신중하고 엄격하게 심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sup>22</sup> 이에 비추어볼 때, 북한군 포로가 송환을 거부하고 한국으로의 귀순을 원할 경우 포로 송환의무의 예외는 국제법에 의해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논리는 남용이 가능하며 특히 한국의 참관 시 포로 전향 강요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송환 의사 확인에 있어서는 ICRC

에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2. 북한이 교전당사국이 아닌 경우

북한군이 러시아 군대에 공식 편입되어 전투에 참여한다면 설령 북한이 교전당사국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들은 러시아 정규군의 구성원으로서 포로 지위를 부여받을 것이다. 이 경우 송환을 거부하는 북한군의 한국 송환 문제는 송환 대상이 러시아라는 것을 제외하면 북한이 교전당사국인 경우와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북한이 공식적인 교전당사국으로서의 지위를 부인하고 러시아 역시 그 소속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적대행위에 가담하여 포획된 북한군은 합법적인 전투원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그 결과 포로 지위를 부여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은 이른바 ‘불법전투원’ 내지 ‘비특권적 교전자’로서 우크라이나 국내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이 경우 포획된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국내법 위반자로서 신병을 확보한 우크라이나에게 우선적 관할권이 있으므로, 이들의 한국 송환 여부는 법의 문제가 아니라 순전히 우크라이나와 한국이 협의를 통해 해결할 정치적·외교적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이 문제를 범죄인 인도조약의 틀 내에서 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범죄인 인도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을 것이다.

## V. 결론 및 시사점

전통적인 전시 중립법에 따르면 국제적 무력충돌에 참여하지 않는 비교전당사국은 중립국으로서 전쟁수행에 관여해서는 안 되며 모든 교전당사국을 평등하게 대우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유엔 헌장 제2조 4항에 따라 무력행사 금지의 원칙이 확립된 오늘날 무력충돌에 참여하지 않는 제3국은 불법 침략의 피해국에 대하여 간접적인 원조를 제공할 권리를 갖는다는 ‘제한적 중립’ 개념이 힘을 얻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축적된 각국의 실행은 피해국에 대한 간접적 지원의 적법성에 대한 법적 확신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제한적 중립이 관습국제법적 지위를 확립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이와 같은 실행은 강대국의 일방적 행동이 횡행하는 국제질서를 타개

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이론적·실천적 도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법의 발전방향과도 부합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기초할 때, 한국 정부는 침략의 피해국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국제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러한 ‘권리’를 보유한다는 점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적극적 역할 모색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는 침략국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 당국을 압박하고 파병 북한군의 이탈을 유도해 한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포획된 북한군에게 ‘포로’ 지위가 부여되는 상황에서만 큰 한국의 적극적 역할이 오히려 이들의 포로 전향 강요로 해석되어 불필요한 논란과 긴장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경우 포로의 객관적 의사 확인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진행 간 ICRC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

- 1 국정원 보도자료, “국정원, 북한 특수부대 러-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확인”(2024.10.18.)  
<[https://www.nis.go.kr/CM/1\\_4/view.do?seq=320](https://www.nis.go.kr/CM/1_4/view.do?seq=320)>.
- 2 연합뉴스, “북한, 러 파병 사실상 시인 … 그런 일 있다면 국제규범 부합,” (2024.10.25.).
- 3 "War in Ukraine: Live Updates from the Security Council and the Field," UN News (30 October 2024).
- 4 정식명칭은 “육전에 있어서 중립국 및 중립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specting the Rights and Duties of Neutral Powers and Persons in Case of War on Land)으로 1907.10.18 서명, 1910.1.26 발효되었다.
- 5 정식명칭은 “해전에 있어서 중립국의 권리·의무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specting the Rights and Duties of Neutral Powers in Naval War)으로 1907.10.18 서명, 1910.1.26 발효되었다.
- 6 보다 상세한 내용은 김성원, “현대 국제법상 중립법의 실효성에 관한 고찰,” 『동아법학』, 제56권(2012), pp.389-413; 안준형, “국제법상 중립법의 실효성과 한반도에서의 적용 -한국전쟁에서의 실행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61권 제3호(2016), pp.131-163 참조.
- 7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Advisory Opinion, I.C.J. Reports 1996, p.261, paras.88-89.
- 8 1907년 헤이그 제5협약 제7조; 1907년 헤이그 제13협약 제6조.
- 9 Wolff Heintschel von Heinegg, “Benevolent Third States in 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The Myth of the Irrelevance of the Law of Neutrality,” in Michael Schmitt & Jelena Pejic (eds.), International Law and Armed Conflict: Exploring the Faultlines (Martinus Nijhoff, 2007), pp.547-551; Robert W. Tucker, The Law of War and Neutrality at Sea (The LawBook Exchange, 1955), p.192; Stephen C. Neff, The Rights and Duties of Neutrals: A General History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00), pp.188-189.
- 10 대표적인 논의로 김상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립법의 진화: ‘제한적 중립’ 개념을 중심으로,” 『아주법학』, 제17권 4호(2024), pp.231-256 참조.
- 11 Christoph Trebesch, et al., "The Ukraine Support Tracker: Which Countries Help Ukraine and How?," Kiel Working Paper, No.2218 (February 2023), p.1.
- 12 UN Doc. S/PV.9399 (17 August 2023); "Germany to Send Ukraine Weapons in Historic Shift on Military Aid," Politico (26 February 2022); "Defending Ukraine In Its Hour of Maximum Need," European Union External Action (1 March 2022).

⋮ 필자 소개 ⋮

**안준형** 교수는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국제법 헌안 Brief**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대한국제법학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 13 연설문의 내용(영문번역본)은 같은 날 주유엔 러시아 대표부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 첨부되어 있다. UN Doc. S/2022/154 (5 March 2022).
- 14 UN Doc. A/RES/ES-11/1 (18 March 2022).
- 15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 제1조 및 1949년 제네바 제3협약 제4조(A)(2)는 합법적 전투원의 요건으로서 ① 그 부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에 의하여 지휘될 것, ② 멀리서 인식될 수 있는 고정된 식별표지를 가질 것, ③ 공공연하게 무기를 휴대할 것, ④ 전쟁에 관한 법규 및 관행에 따라 그들의 작전을 행할 것 등 네 가지 요건이 누적적으로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16 제1추가개정서 제47조 2항에 따르면, (a) 무력충돌에서 싸우기 위하여 국내 또는 국외에서 특별히 징집된 자, (b) 실제로 적대행위에 직접 참가하는 자, (c) 근본적으로 사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적대행위에 참가한 자 및 충돌당사국에 의하여 또는 충돌당사국을 위하여 그 당사국 군대의 유사한 지위 및 기능의 전투원에게 약속되거나 지급된 것을 실질적으로 초과하는 물질적 보상을 약속받은 자, (d) 충돌당사국의 국민이 아니거나 충돌당사국에 의하여 통치되는 영토의 주민이 아닌 자, (e) 충돌당사국의 군대의 구성원이 아닌 자, (f) 충돌당사국이 아닌 국가에 의하여 동국의 군대구성원으로서 공적인 임무를 띠고 파견되지 아니한 자 등의 여섯 가지 요건이 모두 누적적으로 충족된 자만이 용병으로 간주된다.
- 17 Israel Military Court, Military Prosecutor v. Omar Mahmud Kassem and Others (13 April 1969), in International Law Reports, Vol.42 (1971), pp.470-483.
- 18 Prosecutor v. Duško Tadić, ICTY, Judgement (Appeals Chamber), 15 July 1999, Case No. IT-94-1-A, para.94.
- 19 보다 상세한 논의는 안준형, “국제인도법상 불법전투원의 법적 지위,” 『서울국제법연구』, 제28권 1호(2021), pp.131-165 참조.
- 20 UN Doc. A/RES/610(VII) (1952), para. 2.
- 21 Jean S. Pictet, Commentary on Geneva Convention III (ICRC, 1960), p.546.
- 22 ICRC, Commentary on the Third Geneva Conven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1), p.1638, para.4470.